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9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으로 “결손처분” 용어를 “정리보류” 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- 지방세기본법등에서 지방세징수법등으로 인용 조항등 변경사항 반영

주요내용

-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시행령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관련 법령 변경
(안 제2조제3호, 제2조제6호가목, 안 제3조제1항제4호)
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“결손처분” 을 “정리보류” 로 관련 법령 변경 (안 제4조제1항제7호, 별지 제1호서식)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법령 정비(삭제)에 따라 관련 법령 변경
(안 제7조제3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붙임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2. 09. 20. ~ 2022. 10. 11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현행조례 : 붙임5

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단서 중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31조” 를 “「지방세징수법시행령」 제31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“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” 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지방세기본법 제68조” 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결손처분액” 을 “정리보류액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, 수령자” 를 “수령자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결손처분된” 을 “정리보류된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성실납세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성실납세과장 배 순 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체납행정팀장 이 대 순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대 순 (행정 3986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과년도 체납액”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6. “은닉재산”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생 략)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----- -----, ----- 「<u>지방세징수법 시행령</u>」 제31조----- ----- -----.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「<u>지방세징수법</u>」 제39조----- ----- -----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지방세징수법</u>」 제18조-----</p>

축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
공무원

②·③ (생략)

제4조(지급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~ 6. (생략)
7. 결손처분액을 징수한 경우 : 징수액의 100분의 5

② (생략)

제7조(포상금 지급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세입징수 포상금 신청서					
세입구분		세입내액		포상금 신청액 (원)	비고
		건수	세액(원)		
과년도 채납액	제4조제1항제1호				
	제4조제1항제2호				
	제4조제1항제3호				
숨은세원 발굴	제4조제1항제4호				
	제4조제1항제5호				
결손처분된 채납액	제4조제1항제7호				
합계					
<p>「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소 속(민간인의 경우 주소) 직 급(민간인의 경우 생년월일) 성 명 (인)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</p> <p>안산시장 귀하</p>					
첨부					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지급기준) ①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정리보류액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포상금 지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 수령자-----

--.

[별지 제1호서식]

세입징수 포상금 신청서					
세입구분		세입내액		포상금 신청액 (원)	비고
		건수	세액(원)		
과년도 채납액	제4조제1항제1호				
	제4조제1항제2호				
	제4조제1항제3호				
숨은세원 발굴	제4조제1항제4호				
	제4조제1항제5호				
정리보류된 채납액	제4조제1항제7호				
합계					
<p>「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소 속(민간인의 경우 주소) 직 급(민간인의 경우 생년월일) 성 명 (인)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</p> <p>안산시장 귀하</p>					
첨부					